

2023년도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원가분석사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21조에 의거 2023년도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공인 번호 : 제2020-01호(기획재정부)

I. 시험 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수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응 시 자 격
제18회	제1차 시험	2023.08.04 ~ 08. 10	2023. 08. 26.	2023. 09. 02.	제한 없음
	제2차 시험	2023.10.06 ~ 10. 12	2023. 10. 28.	2023. 11. 11.	제17회 또는 제18회의 제1차 시험 합격자, 검정관리·운영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한 방역당국의 조치 또는 본 협회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II. 시험 장소

매 회차 시험일 1주일 전에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관리시스템(www.costanalyst.or.kr)에 게시합니다.
<자격시험은 서울지역에서만 실시 됨>

III. 제1차 시험 면제 (원가분석사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19조)

1. 제1차 시험 면제신청

구 분		접수기간(1차)	면제통보일
제18회	제1차 시험 면제신청(Ⅰ)	2023.07.10. ~ 07.12	2023.07.22. 이후
	제1차 시험 면제신청(Ⅱ)	2023.09.18. ~ 09.20	2023.10.05. 이후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한 방역당국의 조치 또는 본 협회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면제대상 및 증빙서류 (제1차 시험 검정과목 :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경제원론)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과목을 이수한 자

㉠ 4년제 대학의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를 졸업한 자: 졸업증명서

㉡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제1차 시험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제1차 시험과목 이수 확인되어야함)

㉢ 대학 재학 중인 자로서 제1차 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성적증명서(제1차 시험과목 이수 확인되어야함)

㉣ 경제, 경영, 회계학 부전공자(복수전공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제1차 시험과목 이수 확인되어야함)

㉤ 외국어로 기록된 증빙서류는 한글 번역 후 공증을 받아서 제출

※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과목이수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만 인정됨

니다.

- 2)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부장급으로서 회계, 회계감사 또는 계약, 조달업무원가 계산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경력이 증명되는 자 : 공무원, 군인종사자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경력 증명서, 정부투자기관 종사자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경력 증명서와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3) 대위이상의 경리, 재정 등 병과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계약업무 등에 재직 시 회계감사·공사·구매조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이 증명되는 자 :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경력 증명서
- 4) 원가계산용역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원가계산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이 증명되는 자 :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은 발급일이 1개월 이내일 것

나. 소속기관장의 직인이 실제 날인된 경력증명서 또는 전자 관인으로 발급된 경력증명서 가능

3.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4. 면제신청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관리시스템(www.costanalyst.or.kr)에 접속하여 제1차 시험 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pdf파일로 첨부하여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1차 시험 면제신청자의 경력 산정기준일은 당해 회차 제2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합니다.
6. 제1차 시험 면제신청자는 면제승인을 받은 후에 제2차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7. **이전에 면제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다시 면제신청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IV. 시험 개요

1. 검정 과목

구 분	검 정 과 목 (4과목)	검 정 방 법
제1차 시험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경제원론	필기시험(과목당40문제) 객관식(4지선다형)
제2차 시험	제조원가계산실무 I, 제조원가계산실무 II, 공사 및 기타 원가계산실무, 원가관련제도 및 법규	필기시험(과목당30~40문제) 객관식 및 주관식 혼합형

2. 과목별 출제기준 <재무회계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며, 기준일은 2023. 1. 1.로 한다.>

가. 제1차 시험

검정 과목	주 요 검 정 내 용	시 간
재무회계	회계의 기본원리,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가증권, 부채와 자본, 수익과 비용,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재무제표, 경영분석	50분
원가회계	원가회계의 기초, 원가의 개념, 원가계산 종류와 절차, 요소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50분
관리회계	표준원가에 의한 원가관리, 원가-조업도-이익분석,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 예산관리, 성과평가를 위한 책임회계와 내부대체가격, 확실성하의 의사결정, 가격 결정, 자본예산의 편성 투자안의 타당성분석	50분
경제원론	수요와 공급, 탄력성 및 시장균형, 소비자 행동과 기업행위(수요곡선, 비용곡선) 정부의 역할(시장실패, 공공재와 외부효과), 공공투자사업의 분석(비용, 편익분석) 거시경제균형(상품-화폐, 노동시장의 균형),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국제무역, 경상수지와 외환시장	50분

나. 제2차 시험

검정 과 목	주요 검정 내용	시 간
제조원가계산실무 I	실무연계 원가회계, 제조부문개별원가계산, 실제원가, 정상원가, 예정원가, 사후정산, 연산품원가계산	50분
제조원가계산실무 II	실무연계 관리회계, 용역원가, 수입원가계산 정부조달원가, 방산물자원가	50분
공사 및 기타 원가계산 실무	토목, 건축, 설비, 전기, 위생설비, 공사원가계산실무, ES,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감사	50분
원가관련 제도 및 법규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자치부 관련 예규	50분

V. 응시원서 접수

1. 접수방법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관리시스템(www.costanalyst.or.kr)에 접속 후 응시원서를 작성·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 18 : 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칼라 탈모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사진은 합격 시 자격증 발급에 사용되므로 셀카사진, 배경있는 전신사진 등은 지양해 주십시오.)

※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 사진을 첨부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2. 응시수수료 : 50,000원

결제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방법이용

(무통장 입금 시 화면에 '결제대기'로 표시되나, 이는 오류가 아니고 내부관리 사항임)

3. 응시료 환불

구 분	환불 등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접수취소	전액 환불
- 응시원서 접수마감 후 3일 이내 접수취소	50% 환불
- 응시원서 접수마감 후 3일을 경과한 후 접수취소	환불금액 없음

※ 응시원서 접수취소에 따른 환불은 홈페이지 내에서 바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이메일 또는 전화로 협회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한 방역당국의 조치 등으로 시험일이 연기될 때에는 변경 공고된 시험일의 7일 이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를 환불합니다.

4. 응시표 교부

응시표는 시험일 1주일 전부터 시험당일까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관리시스템(www.costanalyst.or.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일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접수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VI. 모범답안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1. 답안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구 분	답안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제18회 제1차 자격시험	2023. 08. 28 ~ 08. 30
제18회 제2차 자격시험	2023. 10. 30 ~ 11. 01

2. 답안 공개 및 이의신청 방법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관리시스템(www.costanalyst.or.kr) 「합격자 발표」 모범답안을 공개하며, 모범답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건은 출제위원 등 시험위원의 검토와 교육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방침을 결정하며, 합격자발표 시에 처리결과를 공표합니다.

VII. 합격기준 및 합격자 공고

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모두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 합격자 발표일에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관리시스템(www.costanalyst.or.kr) 「알림마당」에 합격자 명단을 공고합니다.

VIII. 합격통지서 및 등록증 발급

1. 합격통지서 발급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관리시스템(www.costanalyst.or.kr) ⇨ 「합격자발표」 ⇨

「합격증 발급」에서 「원가분석사 자격시험 합격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30일 간)

나. 「원가분석사 자격시험 합격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합격자 통지에 갈음합니다.(합격통지서는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2. 자격등록 및 등록증 발급

가.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원가협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원가분석사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67조)

○ 등록기관 : 한국원가관리협회 사무국(안내 : 02-598-4753)

○ 등록 및 관리에 따른 비용 : ₩100,000원(등록 유효기간 : 5년)

○ 결제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방법이용

나. 등록 방법

-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관리시스템(www.costanalyst.or.kr) 접속 → 「등록신청」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비용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 원가분석사 등록증 및 자격증카드는 원가분석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교부합니다.

IX. 응시자 유의사항

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1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응시표, 컴퓨터용 검정색 싸인펜, 검정색 볼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자 또는 지정시간 이후에 도착한 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3. 응시자는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중도 포기자 포함)은 제2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간 및 **응시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단, 손목시계는 시간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합니다.**
6. 시험시간은 타종 또는 감독위원의 구두지시로 관리되고,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시간관리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7.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시험시작 후 30분전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유의사항** 및 **답안지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서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 작성은 객관식의 경우에는 **컴퓨터용 검정색 싸인펜 한 가지 필기구**만을 사용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식의 경우에는 검정색 볼펜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연필, 빨간색 필기구 등으로 작성 시 채점되지 않음)**
 -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재작성하여야 합니다.**(답안지는 시험 종료 5분 전까지만 교체할 수 있음, 수정액 및 스티커는 사용금지)
 - 주관식 시험문제 답안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횟수 제한 없음)**, 해당 답안 칸의 여백에 다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답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중도 포기한 응시자는 그 시간 이후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채점은 전산자동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지 기재착오, 마킹착오, 지정 필기구이외 기타 필기구 사용 등 **답안지 작성 주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귀책사유가 됩니다.
※ 이외에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고 시험지에만 작성한 경우 채점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식 문제 중 계산식, 서술형 등에 대한 답도 답안지에 기재하되, 계산식과 답안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채점 시 소정의 점수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답안만 작성하는 경우 채점에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9.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0. 응시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접수자(**응시원서 접수 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11.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원가분석사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12.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음**이며, 만약 시험시행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을 꺼서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안함)하시기 바랍니다.

13.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학용·재무용 계산기 및 저장기능이 있는 계산기 사용금지

14.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X. 기타

- 상기 시험 시행일정은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한 방역당국의 조치 또는 본 협회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에 관한 추가정보는 수시로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자격을관리시스템 (www.costanalyst.or.kr) 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관리자
 - 기관명 : (사)한국원가관리협회
 - 대표자 : 정의동
 - 연락처 : 02-598-4753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64, 404호(서초동, 교대벤처타워)

